



첨부 : 1) 관계서류 1건.
2) 고시안 1부. 끝.
(제2안)
수신 : 건설부장관 (도시시설계획과장)
제목 : 같음.
1. 우리시 도시계획시설(유수지)을 별첨과 같이 결정하였기 보고합니다.
첨부 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각1부. 끝.
(제3안)
수신 : 총무처장관
제목 : 관보 게재 의뢰
1. 다음과 같이 관보 게재 의뢰 합니다.
가. 게재구분 : 고시
나. 게재건명 : 도시계획시설(유수지)결정
다. 법적근거 : 도시계획법 제12조.
라. 게재내용 : 별첨.
첨부 : 고시문 사본 2부. 끝.
(제4조)
수신 : 성동구청장 (도시정비과장)



제목 : 갑음.

1. 도정30310-35639('87.11.12)호 및 시설30310-519('87.11.20)호와

관련임.



2. 위 호와 관련 귀구 금호4가동 56일대에 도시계획시설(유수지)을 별첨과 같이

결정하였기 통보하니, 관계도면 정리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하고, 관련

부서에 알리기 바라며,

3.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승인은 공사

시행과 관련 귀구에서 시행하고 관련 부서에 통보하기 바람.

첨부 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각1부. 끝.

(계5안)

수신 : 수신처 참조 113/

발신 : 과장

제목 : 갑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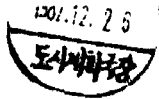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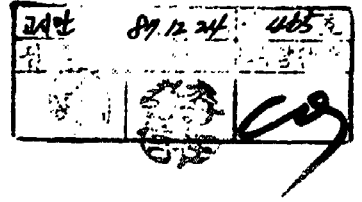
1. 성동구 금호4가동 56일대의 도시계획시설(유수지)을 별첨과 같이 결정하였기

통보하오니,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각1부. 끝.

수신처 : 서과 - 40, 49, 52, 61.

고 시



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 
도시계획시설(유수지)결정

1. 우리시 도시계획시설(유수지)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성동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1987. 12. 26

서울특별시장

○ 결정 조서

구분	시설명	위 치	규모(m <sup>2</sup> )	비 고
신설	유수지	성동구 금호4가동 56일대	8,810	

○ 결정 도면 :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성동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. 끝.

